

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(2023년 1차)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R&D)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2일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

1 공고 개요

□ 추진목적

-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

< 추진근거 >

- ▶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
- ▶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제1호
- ▶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(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)
- ▶ 「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99호)

□ 주요내용

-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’에서 수의계약 연계(지정기간 3년) 등 지원

2

신청자격

□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② **종료년도 기준** 최근 5년 이내('18.1.1.~'22.12.31.)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R&D) 완료(성공, 보통) 기술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**

*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(60점 이상, '21.11.17 이전) 또는 보통 이상('21.11.17 이후) 통보를 받은 기술

**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,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

3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공고 및 신청기간

○ 공고 : '22. 2. 22(수) ~ 3. 17(금) 16:00까지(공고기간 중 상시접수)

□ 신청 및 접수방법

- ①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* 완료 확인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- 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(<https://hub.kaia.re.kr>)로 신청서류 제출

구 분	나라장터 등록(조달업체/식별번호) 안내
등록방법	○ www.g2b.go.kr → 조달업체로 등록 → 로그인 → 물품식별번호 등록
등록 매뉴얼	○ (조달업체 등록 관련) 화면 우측 최상단 'e-고객센터' → 사용자설명서 → '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-조달업체' (115번 게시글) ○ (물품식별번호 관련) 화면 우측 최상단 'e-고객센터' → 사용자설명서 → '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-물품식별번호' (122번 게시글)
문의처	○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: (국번없이)1588-0800

○ (문의 및 접수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

담당부서	연락처	접수 방법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	031-389-6371	"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"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접수 불가) - 홈페이지: https://hub.kaia.re.kr

○ (제출서류)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(파일명 : 신청기업명) 제출

No	구 성	구분	관련서식	예시/참고사항
①	혁신제품 지정 신청서	필수	서식1	- 한글/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- 물품분류번호/식별번호발급 필수
②	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(R&D) 완료(성공/보통)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	필수	-	-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
③	혁신제품 설명서	필수	서식2	-
④	제품 규격서	필수	서식3	-
⑤	자기점검표	필수	서식4	- 혁신제품 규격검토용
⑥	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	필수	서식5	-
⑦	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 및 증빙 -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서식6	-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증허가의 획득신고,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▶ 해당 없을 시, 제출 서식에 '해당없음' 표기하여 제출
⑧	기술·품질 소명자료 목록 및 증빙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	필수	서식7	-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,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·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▶ 기술인증 예시 : NET, NEP, 특허 등 ▶ 품질인증 예시 : KS인증, K마크, 환경표지인증 등
⑨	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 <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> (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)	해당 시	-	- 기술실시계약보고서(계약서 사본 포함),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
⑩	신청자 사업자등록증명	필수	-	- 정부24(www.gov.kr)에서 90일 이내 발급분

*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

** 제출서류 : [첨부 1(제출서류 서식①~⑦)] 참조

□ 지정 절차 및 평가방법

주요 내용	담당기관	세부 내용
제품등록	신청기업	▶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(물품식별번호 확인) *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 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↓		
신청	신청기업	▶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로 신청 ▶ 나라장터에 등록 완료된 물품만 신청 가능
↓		
서류검토	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	▶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↓		
조달적합성 검토	조달청	▶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
↓		
현장평가	평가위원회	▶ 신청제품의 제조현장(신청기업 또는 위탁생산기업)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,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,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(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)
↓		
서류/발표평가	평가위원회	▶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을 평가*하며, 필요시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*종합평가점수(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) 70점 이상인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
↓		
심의예정 공고	국토교통부	▶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(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20일 이상)
↓		
조달정책심의위원회, 공공수요발굴위원회	기획재정부	▶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

□ 평가기준
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

구분	평 가 기 준	비 고
현장평가	1. 제품의 확인 ○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. 연구개발기술 적용 ○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.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○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. 제품의 성능 확인 ○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. 기타 확인사항 ○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	지침 별지 제3호 서식
서류평가	1.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(40) 가.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○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·제품인지 여부 * 국민 생활편의 향상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. 공공구매 필요성 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*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*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. 현안의 시급성 ○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*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, 국민적 수요, 공론화 정도 *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.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* 국민생활 향상, 사회 안전 해결,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*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. 시장성(20) 가. 기대 시장규모 ○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○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. 타 산업 파급성 ○ 공공구매 확장성 *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(국내/국외) ○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·발전 가능성 *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*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. 혁신성(40) 가. 기술·제품의 신규성 ○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*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* 품질, 사용의 편의성, 가격프리미엄 등 나. 기술·제품의 탁월성 ○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.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○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○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	지침 별지 제4호 서식

참고

'23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연간공고 계획

□ 2023년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 일정(연 4회)

차수	공고기간	비고
1차	'23.02.22.~'23.03.17.	* 기술혁신성평가 3월, 안전상정 6월
2차	'23.05.04.~'23.05.31.	* 기술혁신성평가 6월, 안전상정 9월
3차	'23.08.04.~'23.08.31.	* 기술혁신성평가 9월, 안전상정 12월
4차	'23.11.01.~'23.11.29.	* 기술혁신성평가 12월, 안전상정 '23년 예정

* 차수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최종 지정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조달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지정공고 신청방법

○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* 완료 확인
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○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(<https://hub.kaia.re.kr>)로 신청서류 제출

□ 사전 컨설팅 안내

○ (사전 컨설팅) 중소기업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온라인 컨설팅 상시 지원

- (신청방법)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
* 사전 컨설팅 신청시 신청서 양식 : [첨부 2] 참조

담당부서	연락처	이메일 주소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	031-389-6371	jwkim@kaia.re.kr

- (접수 및 상담일정) 상시 접수 / 컨설팅 일정 등 협의 후 진행

- (상담내용) 혁신제품 지정제도, 물품등록 및 신청서 작성 등

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 안내

○ (설명회) 중소기업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이해 제고 및 신청을 위한 기본 사항 등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

* KAIA EDU 프로그램으로 3월말 개최 예정이며, 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” 카카오톡 채널 추가시 알림발송 예정

- (신청방법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KAIA EDU 교육 신청(홈페이지 / 참여 / KAIA EDU 교육 / KAIA EDU 교육신청)

* 주소 : <https://www.kaia.re.kr/portal/academy/course/list.do?menuNo=200888>